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20
----------	-------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한창민 · 정춘생 · 윤종오
이주희 · 용혜인 · 손 솔
전종덕 · 정혜경 · 신장식
김종민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정손해배상 요건이 엄격하여 개인정보 유출등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계속되거나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명령 등의 불이행에 대한 집행수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 법정손해배상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면책되도록 함(안 제39조의2).
- 나. 시정조치 명령, 임시중지명령, 공표명령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3 신설).
- 다.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 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단체 등이 그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4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위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9제1항에 제9호의3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0의2. 제64조의3에 따른 임시중지에 관한 사항

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을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전단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

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2.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해당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이행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
2.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출입·검사 협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
4.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의 이행
5.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명령

의 이행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6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임시중지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호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4조의3(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9의2. (생략)</p> <p><u><신설></u></p> <p>10. (생략)</p> <p><u><신설></u></p> <p>11. ~ 16.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생략)</p> <p>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p>	<p>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 ----- -----.</p> <p>1. ~ 9의2. (현행과 같음)</p> <p>9의3. <u>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u></p> <p>10. (현행과 같음)</p> <p>10의2. <u>제64조의3에 따른 임시 중지에 관한 사항</u></p> <p>11. ~ 16.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 ----- ----- ----- ----- -----</p>

②·③ (생략)

<신설>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2.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해당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3조의3(이행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

2.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출입·검사 협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

4.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의 이행

5.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명령의 이행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4조의3(임시중지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호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

<p>제75조(과태료)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④·⑤ (생략)</p>	<p>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64조의3(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④·⑤ (현행과 같음)</p>
--	---